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37)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미경 (더불어민주당, 은평구 제2선거구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존경하는 선배.동료 위원 여러분! 김미경 의원입니다.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 차원에서,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노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